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63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시설(건축) 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예정인원

(단위: 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9급	시설 (건축)	15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건축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 -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 -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경상남도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합계		15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 및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

○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격요건,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및 제50조의3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각 평정요소마다 상 · 중 · 하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 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 시험실시 기관: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1) **최종(면접)시험일(2022. 11. 26.)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관련 법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교정 · 보호 직렬은 20세)이상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3) 거주지 제한(아래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2022. 11. 26.)까지 계속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1]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응시요건은 위의 조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4) 성별: 제한 없음

5)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1) 거주기간 합산 요건(3년)의 기간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 제1항에 따름

관련 법령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자격 요건: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2022. 11. 26.)

<table>
<tr><th>직렬(직류)
및 직급</th><th>자격요건</th></tr>
<tr><td>시설(건축)
9급</td><td>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건축 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한 사람
- 건축 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tr><th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tr>
<tr><td>기 술 사</td><td>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td></tr>
<tr><td>기 능 장</td><td>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td></tr>
<tr><td>기 사</td><td>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tr>
<tr><td>산업기사</td><td>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tr>
<tr><td>기 능 사</td><td>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td></tr>
</table>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채용 예정 직렬의 담당 예정 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td></tr>
</table>

- **공통사항**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경력증명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다. 심사요소[인정기준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2. 11. 4.)]

직렬(직류)	심사요소
시설(건축)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건축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채용 예정 직렬의 담당 예정 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한 적합성 심사**

4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서류전형	-	-	2022. 11. 18.(금)
제2차 면접시험	2022. 11. 18.(금)	2022. 11. 26.(토)	2022. 12. 2.(금)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http://www.gne.go.kr) 알림마당/ 시험정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게시판 공고(개인별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22. 11. 1.(화) ~ 11. 4.(금)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등기우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2022. 11. 4.)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 담당자 앞" 표기

▹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 응시수수료는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에 동봉하여 제출 (☎055-268-1355)

※ 지원자 본인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원서 도착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것

※ 우편도착 당일 저녁에 원서 도착여부를 휴대전화 SMS로 개별통보 예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 상의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다. **응시수수료**: 5,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제출여부 체크하여 제출	필수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응시수수료: 9급 5,000원(현금 동봉)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상세하게 기재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증명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임용 예정 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노후시설환경개선, 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필수
5. 자격증(또는 자격증명서, 입상내역)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또는 자격증명서, 입상내역) 사본(**필수**)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또는 자격증명서) 등 사본(**해당자**) ※ 자격증(자격증명서)의 종류 및 자격번호 혹은 입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필수 (해당자)
6. 경력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필수) 경력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원본)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발급자 및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상근직, 비상근직(주 근무시간) 여부 명시 ※ 비상근직(시간제)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원본)	필수 (해당자)
7.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변동사항(2022. 1. 1.이전부터) 포함**하여 발급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서명 필수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9.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 자격요건 해당 항목에 √ 표시할 것 ○ 서명 필수	필수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서명 필수	필수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등재가 안된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사항 등재 여부 반드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해당자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원본이 유일한 자격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담당자(055-268-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규를 준용합니다.

나.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http://www.gne.go.kr) '알림마당-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 란에 공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제3항)합니다.

다. 채용 직렬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재공고 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는 재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4년간 제한**됩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담당자(☎ 055-268-1355)**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